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

의안번호	2622
------	------

제의일자 : 2024. 11. 12.

제 의 자 : 금천구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42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'도병두'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,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함.

3.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

상 임 위 원 회	당 초	변 경
행정재경위원회	고성미, 정재동 정순기, 윤영희	고성미, 정재동 도병두, 정순기 윤영희
복지건설위원회	엄셋별, 고영찬 김용술, 도병두 장규권	엄셋별, 고영찬 김용술, 장규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42조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」

[시행 2024. 5. 20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88호, 2024. 5. 20., 일부개정]

제42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개정 2024.5.20.>
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상임위원의 선임 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 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<신설 2024.5.20.>

[제41조에서 이동,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<2024.5.20.>]